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6. 12 선고 2024가단5600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5. 29.

판 결 선 고 2024. 6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8,937,603원 및 그 중 38,907,205원에 대하여 2024. 1. 1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피고가 연대보증한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21. 1. 18.자 시설대

여(리스, 렌트)계약이 피고의 연체로 해지됨에 따른 원금 38,907,205

원, 지연배상금 30,398원(2024. 1. 12.자 기준) 청구
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)

판사 김한철